

대법원 2024. 8. 23 선고 2024다25586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8. 23 선고 2024다255861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6. 14 자 2024재나50027 결정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2. 24 자 2019재나127 결정

의정부지방법원 2019. 6. 13 선고 2019나310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. 12. 19 선고 2018가소24049 판결

전문

원고(재심원고), 상고인

A

피고(재심피고), 피상고인

B

판결선고 2024. 8. 23.

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. 6. 14. 선고 2024재나50027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상환, 대법관 오경미, 주 심 대법관 권영준, 대법관 박영재